

N · E · W · S · P · L · A · Z · A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본협회 조사부

미국편

비자 사 및 마스터카드 사, 반트러스트 소송에 직면

미국 법무부는 6개월간의 조사를 끝내면서 비자 사와 마스터카드 사가 회원 은행들에 대하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와 디스커버 카드의 발급을 금지한 것을 이유로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당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당해 사건은 반트러스트법뿐 만 아니라 미국 신용카드 산업에 대하여 광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서 비자 사와 마스터카드 사가 당해 금지를 통해 불공정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은행은 비자 사와 마스터카드 사 중 어느 한 회사의 회원이며, 보통은 양쪽 모두 회원으로 되어 있다. 뉴욕에 소재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는 최근 은행 발급 카드에 시장을 잠식당하여 왔는데, 은행들이 자사 카드를 발급하여 주도록 작년 5월 이후로 은행들에 대하여 로비를 벌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는 은행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회원 자격을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당해 상황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법무부의 담당 변호사들과 당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충원된 외부 법률가들은 비자 사와 마스터카드 사가 그들의 규칙을 변경하여 회원 은행들이 경쟁회사의 카드를 발

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 달 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법무부는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고위 관리들과 신용카드협회 대표들간의 회의일자를 잠정적으로 2월 27일로 정하였다고 당해 문제에 관여한 한 법률가는 밝혔다. 그러한 회의는 보통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취하는 마지막 조치이다.

비자 사와 마스터카드 사는 법무부의 제소에 격렬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당해 사건은 엄청난 법률적 중요성을 지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회사들이 상호 협력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비교적 연구가 덜 이루어진 합작 투자법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당해 사건은 또한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신용카드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는 신용카드 시장점유율이 10년 전의 24.5%에서 작년에는 15.8%까지 하락하였는데, 만일 비자 사와 마스터카드 사가 은행에 대한 경쟁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발급 금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결말지어진다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의 이러한 쇠락은 극적으로 반전될 것이다.

(97, 2/7 The Wall Street Journal)

미국 FTC, 사무용품 판매업체간의 기업결합 반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사무용품 “초대형 상점”的 운영업체인 Staples 사와 Office Depot 사간의 40억달러 상당의 기업결합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하였다.

당해 조치는 미국에서 매수 합병(M&A) 활동이 기록적 수준인 때에 나타났으며, 이는 반트러스트 당국이 최근 전면 저지를 시도한 최대의 기업결합

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대형 기업결합과 관련한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영향은 주로 미국 소매업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FTC는 법무부와 함께 광범한 산업영역에서의 다수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들 중 몇몇은 소수의 기업에 의한 상당한 시장점유율의 집중을 야기하였다.

Staples 사 및 Office Depot 사는 FTC의 조치에 대하여 “격렬히 다투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신들의 기업결합은 “친경쟁적이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두 업체는 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 것임을 공언하였다.

FTC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Staples 사와 Office Depot 사가 경쟁에 직면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장에 서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은 따라서 경쟁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

붙였다.

논쟁의 초점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때에 FTC가 어떻게 지역시장의 범위를 확정하는가이다. 현재까지 동 기관은 다수의 산업이 전세계적 경쟁으로 전환함을 반영하여 지역시장을 넓게 보는 견해를 취하였다고 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 연구위원인 Robert Crandall은 밝혔다. 그 결과 다른 견해를 취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미국 회사들간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집중되게 되었다.

Staples 사와 Office Depot 사는 자신들이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넓게 보는 견해를 취하여, 자신들은 전부 합쳐 총매출액의 단지 5~6%만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FTC의 조치는 동 기관이 당해 시장을 보다 좁게 확정하기로 하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살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Crandall은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당해 조치로 매수 및 합병의 추세가 늦춰지거나 본질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Staples 사는 12일,

11시간의 협상 끝에 사무용품 초대형상점 순위 3위인 Office Max Inc.에 63개의 점포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당해 합의는 FTC가 Staples - Office Depot 기업결합은 사무용품 초대형상점 부문에서의 이들 기업들의 지배상태 및 더 높은 가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제소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FTC는 17일까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더 이상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처음에 이들 회사들과의 논의는 FTC의 의견에 당해 거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것인 62개 점포의 매각에 집중되었었다. 이를 동안 협상한 끝에 Office Max 사는 수익성이 높은 점포 몇몇을 포함, 63개에 달하는 Office Depot 사 및 Staples 사의 점포를 1억 880만 달러라는 헐값에 취득하게 되었다.

만일 FTC가 Staples - Office Depot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이는 다층적 경쟁의 종막을 고하고 1,000개 이상의 점포 및 연간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인, OfficeMax 사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초대형 기업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잠정적인 합의안에 따르면, Staples 사 및 Office Depot 사는 연간 매출액 중 약 3억 3,4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체인점 점포를 매각하게 된다. 당해 매각은 기업결합 이후 경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될 도시에서의 경쟁을 유지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OfficeMax 사는 이로 인하여 볼티모어, 워싱턴, 샌디에고, 템파 및 루이스빌과 같은 신규시장에 신속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며, OfficeMax 사는 638개 점포 및 매출액 40억 달러의 제2위 업체가 될 것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 FTC는 대중의 비난과 법원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Staples 사는 FTC와 소송에서 다툴 계획임을 밝혀왔으며, 이로 인해 FTC는 사무용품 초대형상점 부문은 경쟁적이고 진입이 쉬운 사무용품 사업부문과 구별되는 별개의 시장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반트리스트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쉽게 승소하기란 어

려울 것이라고 하여 왔다.

(97, 3/11 Financial Times & 97, 3/13 The Wall Street Journal)

반트리스트 심사 회피에 대한 벌금 증가

미국 연방 반트리스트 집행기관들은 기업결합 심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는 정부에게 중요한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하여 1980년대에 벌금으로 660만 달러를 부과한 이후 2,7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였으며, 거의 절반을 작년에 부과하였다. 지난 3년간 5개 기업이 1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들 중에는 Sara Lee Corp., 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및 Pennzoil Co.와 같은 유명한 회사들도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FTC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신

속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할 것이다”고 하였다.

가장 최근의 사건에서, FTC는 27일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Mahle GmbH가 경쟁회사인 브라질의 Metal Leve SA의 의결권 주식 50.1%를 4,000만 달러로 취득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기록적인 5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두 회사는 모두 미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어 FTC는 이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 1996년 6월 당해 거래를 알게 된 이후 FTC는 이를 보류시켰다.

조사 결과 동 기관은 당해 거래가 성사되면 Mahle 사는 독점사업자가 되고 대형화물차에 사용되는 피스톤의 시장 가격을 인상시켜 1년에 2,500만 달러까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FTC는 이들 회사들은 당해 거래가 심각한 반트러스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수비용과 기업결합 이전의 벌금 지불 위험을 형량 한 끝에”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

지만, Mahle 사는 “문제를 덮어 두고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한 기업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벌금 지불 이외에도 Mahle 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소재한 공장 두 곳과 미시간의 연구센터를 포함, 미국에 소재한 디젤 엔진 피스톤 사업을 매각 할 것에 합의하였다.

1976년의 Hart-Scott-Rodino 법은 투자자들이 한 기업의 지분 15% 이상, 또는 최소한 1,500만 달러로 평가된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려 한다면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경우 이들은 반트러스트 당국이 당해 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재정정보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무지로 인해 실수를 범하는 기업들은 도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고의로 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기업이 법을 위반한 날수를 계산하여 이전의 집행당국보다 더욱 무거운 하루당 최고 11,000달러의 벌

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Mahle 사 사건에서 그 벌금액은 당해 취득 가치의 10% 이상이 되었다(벌금은 미국 국고의 수입이 된다).

몇몇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칙은 집행당국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해 절차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고 다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상당히 축소되어야 한다”고 Jones, Day, Reavis & Pogue 법률회사의 반트러스트 변호사인 Joe Sims는 말하고 있다.

시카고에 소재한 Sara Lee 사는 1991년 영국의 Reckitt & Colman PLC로부터 Griffin 구두약 상표와 기타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당해 거래의 가치는 거의 2,600만 달러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Sara Lee 사는 당해 거래를 두 건으로 계산하였는데, Reckitt 사의 미국 자산 가치는 1,310만 달러로, 영국 자산 가치는 1,27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FTC는 Sara Lee 사가 의도적으로 정부에의 신고를 회피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 회사

가 집행당국이 당해 취득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FTC가 당해 거래를 눈치채고 -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언급하려 하지 않고 있다 - 조사한 결과 당해 취득으로 Sara Lee 사는 미국 구두관리 제품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이 밝혀졌다. 동 기관은 당해 회사로 하여금 이전에 취득한 상표와 함께 Griffin 상표를 매각하도록 강제하였다. Sara Lee 사의 대변인은 동 회사는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화해하고 31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였다.

(97, 2/28 The Wall Street Journal)

미국, 국제카르텔 단속 강화 - 우선 스위스 2개사 적발

미국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카르텔행위의 단속 강화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26일 화학품분야에서 스위스 기업 2개사를 적발, 총액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한 사례를 공표했다. 경쟁정책부문에서 제2

기 클린턴 정권의 주요 인사가 확정됨에 따라, 외국기업에 의한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조작 및 시장분할에 반트러스트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스위스기업은 F. 호프만 라로슈 사와 용분츠라우어 사이다. 감미료 및 방부제로서 식품·음료에 널리 사용되는 구연산에 대하여 양사는 공모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판매대상에 대하여서도 부당하게 상호불가침 합의를 맺고 있었다. 2명의 임원 개인에게도 합계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스프링 차장은 발표에 즈음하여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국제카르텔의 수사와 고소를 최우선과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아지노모토 및 쿄와 발효공업 등 일본기업을 포함하는 작년 이후의 적발예를 열거하며, 「카르텔을 모의한 인물이 세계의 어디에 있든지 적발하여 보이겠다」고 선언하였다.

다국적기업에의 감시강화는 제1기 정권의 발족 당초부터의 목표였었으나,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지침(가이드라인) 및 정보수집수단의

정비에 시간이 걸려, 실제의 적발예는 많지 않다. 국제카르텔의 수사협력의 일환으로 캐나다와 2국간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체제가 정비됨으로써 법무부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트러스트 행정의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차관)에는 국장대행인 클라인 씨가 승격되었다. 그는 클린턴대통령의 법률고문 경력이 있다. 민사담당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인맥이 있다고 지적되는 인재가 파견되고 있어, 경쟁정책의 강화를 목표한 인사가 눈에 띈다.

(97, 3/28 일본경제신문)

미 기업합병 기준완화 ‘경영효율화 목적’ 최우선 평가키로

미국정부는 10일 기업합병과 관련한 반트러스트법(미국 독점금지법)의 합병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침을 마련했다. 비용감소 등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침으로 이제까지 독과점방지를 위해 불허됐던 합병건도 적극적

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침은 보잉·맥도널더글러스 통합 등 산업계에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대형합병 추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산업계 전반의 재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로 마련된 방침의 최대 특징은 합병계획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들이 목적으로 제시하는 「경영효율화」를 심사기준의 우선 항목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비용절감이 소비자의 이익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합병계획의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즉, 제품·서비스의 가격 인하가 품질향상으로 이어지는 합병의 순효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조업률이 낮은 2개 업체가 합병할 때 생산 거점을 1곳으로 축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생산통합에 관련해 효율화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97. 4/11 내외경제신문)

EU편

메르세데스 벤츠 사·오펠 사, 가격설정 관련 EU로부터 조사받아

유럽 경쟁당국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사와 GM 사의 자회사인 오펠 사 관련 몇몇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외국에서 구매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판매를 거절하였다고 하는 이의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자동차 가격의 큰 차이에 따른 이익을 보고자 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자동차 판매업체들은 그들이 자국 밖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작년에 동 위원회 소속 관리들은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내국인이 아닌 자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크스바겐 사와 그 자회사인 아우디 사를 수색한 적이 있다.

이 소식은 유럽위원회가 EU 자동차 가격에 대한 6개월마다 의 최근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알려졌는데, 이는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조사된 70개 모델 중 40개 모델에서, EU 내에서 동일한 차종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 간의 차이는 20퍼센트를 넘었다.

가장 큰 가격 차이는 피아트, 포드, 오펠, 시트로엥, 폴크스바겐, 닛산 및 미쓰비시 사의 모델에서 나타났다. 오펠사의 Astra/Kadett와 같은 일부 모델의 경우 가격 차이는 거의 33퍼센트였다.

비록 부가가치세와 환율 변동이 가격 차이의 부분적 원인인기는 하지만, 동 위원회는 이러한 차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국가마다 다른 가격설정 정책을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유럽단일시장 창설 이후 가격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75개 모델 중에 23개 모델이, 포르투갈에서는 21개 모델이 가장 저렴하였다. 독일은 17개 모델에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영국은 15

개 모델, 프랑스는 13개 모델이 그려하였다.

“소비자들은 몇몇 회원국에서 여전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동 위원회는 말하면서 독일, 벨기에, 스페인 및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사에 대한 수색은 이들 나라 모두에서의 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오펠 사의 경우는 오직 네덜란드에만 관련되었다.

만일 이를 중 어느 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EU 경쟁법 규칙 - 소비자들은 단일시장 내 어디에서든지 유사물품을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당해 회사는 반트러스트 적용 면제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 결과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 판매업체들과 배타적인 또는 제한적인 유통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사와 오펠 사에 대한 조사는 초기 단계이지만, 동 위원회는 작년 11월 폴크스바겐 사와 아우디 사에게 이들이 2개월 동안 그들의 자동차 판매 협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이탈리아 자동차 판매업체들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였다고 이의를 신청하여 이들에게 이탈리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97, 2/15, 16,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Anglo-American 사의 Lonrho 사 취득 저지 전망

유럽위원회는 남아공화국 채굴회사인 Anglo-American 사가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동 회사가 영국 기업인 Lonrho 사의 상당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지도 모른다.

당해 거래가 백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우려는 심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Anglo-American 사는 경쟁 담당 조사관들을 만족시킬 구제책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동 위원회는 Anglo-American 사에 당해 취득에 대한 이의 명세서를 송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해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의 성명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하

였다. 동 위원회는 Anglo-American사의 Lonrho 사 지분 28% 취득에 대하여 기업결합 규정에 따른 4개월간 조사의 절반을 진행한 상태이며, 5월초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경쟁 담당 위원인 Van Miert가 당해 거래를 승인할 가능성은 현재 더욱 희박해 보인다.

Van Miert는 이미 Anglo-American 사가 Lonrho 사를 지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할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는 28%의 지분으로 인해 Anglo-American 사는 Lonrho 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며 백금과 로듐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동 위원회는 Anglo-American 사가 촉매성 배기가스 저감장치 및 보석과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백금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브뤼셀의 한 변호사는 말하였다.

작년에 Van Miert는 Lonrho 사의 백금 사업부와 또 다른 남아프리카 기업인 Gencor 사의 자회사인 Impala 사와의 기업결합을 저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백금 시장에

서 Anglo-American 사와 동 회사와의 복점이 형성될 것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한 영국 외교관은 “이 두 사건간에 면도날만큼의 차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Gencor 사는 당해 결정에 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한 상태이다.

Van Miert는 Anglo-American 사에 대하여 Lonrho 사의 지분 규모를 축소하도록 명령하거나, 의결권 제한을 부과하여 Anglo-American 사의 지분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97, 2/28, Financial Times)

EU, 항공사간 제휴에 경고

유럽연합 반트러스트 담당 관리인 Karel Van Miert는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가 계획한 제휴가 항공료 인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면 당해 제휴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양 회사에게 경고하였다.

유럽위원회 경쟁담당 위원인 그는 유럽의회에서의 연설에서 당해 제휴를 형성하는 회사들

의 이익은 항공사 승객들의 이익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다.

“승객들의 장기적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Van Miert는 말하였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의 자유화가 어떻게 항공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 할 것이 확실하다.”

그는 “당해 협정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이익과 당해 협정에서 발생하는 전세계 경제의 진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럽위원회 운송담당 위원인 Neil Kinnock은 25일 이 문제에 대한 동 위원회의 결정이 몇 주 내로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British Airways와 American Airlines간의 제휴는 또한 미국에서도 규제에 직면하여 있는데, 이 제휴는 미국-영국간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협정인 소위 “항공자유화(open skies)” 협정 체결의 성사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는 지난 6월 대서양 횡단 노선의 항공료, 항공편 및 마케팅을 연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미국 반트러

스트법 적용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적용제외는 1993년 이후 유럽과 미국 항공사간의 3개 협정에 부여되어 있고, 여기에는 Lufthansa와 United Airlines간의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American Airlines 및 British Airways는 동 위원회에 반트러스트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상태이지만, Van Miert는 동 위원회는 “보충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몇몇 항공 전문 법률가들과 산업계 임원들은 제안된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간의 제휴의 결과 이들 항공사는 미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항공편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연계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Virgin Atlantic Airways Ltd.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Jeff Shane은 당해 제휴로 인하여 이들 두 항공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 “초기 독점”的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97, 2/2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이탈리아 경쟁당국의 동향

(1)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위원회, 알리탈리아 사에 경고

이탈리아의 경쟁당국인 경쟁·시장보호위원회는 10월 11일, 국내선 시장에서 경쟁저해 행위를 행하였다고 하여 알리탈리아 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하였다.

동 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알리탈리아 사는 리나테 공항(밀라노 시)에서 이착륙대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잠재적인 경쟁상대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1971년에 알리탈리아 사에 대하여 리나테 공항의 이착륙대의 관리업무를 승인하였으나, 정치가 중에는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의 결정은 이탈리아 정부의 알리탈리아 사에 대한 1조 5,000억 리라의 긴급재정원조가 EU 경쟁법에 위반하는 국가보조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가 유럽위원회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아하여 이루어졌다.

(2) 무선전화를 둘러싼 논쟁

이탈리아에서는 무선전화에 관하여 이동전화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슈퍼 무선전화 시스템인 「Fido」가 경쟁저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종래의 무선전화는 이전의 지상전화망에 접속된 전화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집안 또는 그 주변에서만 사용 가능하였다. Fido는 디지털 무선전화(Dect)기술에 기초한 것으로, 도시 전역에서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텔레콤 이탈리아 사(Telecom Italia)는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전기통신그룹인 Stet 가 소유하는 이탈리아 최대의 전기통신사업자이며, 이동전화 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Fido 서비스에의 진입에 착수하여 연말 까지 시험적 서비스 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Stet의 또하나의 자회사인 텔레콤 이탈리아 이동전화회사(Telecom Italia Mobile, TIM)는 수익성이 높은

이탈리아의 이동전화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텔레콤 이탈리아 사는 앞으로 3년 반 동안에 1조 8,000억 리라(12억 달러)를 투자하여 30개 지역에서 Fido를 실용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실험은 곧 Aosta, Brindisi, Florence, Reggio, Emilia 및 Turin 등 각 도시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골격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정부 부처 내에서 의견조정이 행하여지는 단계이다. 그 중 이 슈퍼 무선전화에 대하여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전 수상이며 현재는 이탈리아 경쟁당국의 장으로서 Stet의 독점적 행위를 종종 비판하여 온 줄리아노 아마토 위원장이다.

동 위원장은 금주 의회의 위원회에서 「이는 기존의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인접시장으로 확대하려는 남용행위의 전형적 사건이다. Dect는 기술적으로 보든 법률적으로 보든 이동전화이며, 이동전화사업은 자유화될 것이고, EU는 당해 사업에 1880~1900의 주파수를 잠정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아마토 위원장의 답변에 대하여 Stet의 간부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당국은 10월 26일 의회에 대하여 Fido 사업에 공정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구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동 위원장의 답변을 공식적인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Fido 사업에 규제를 요구하는 견해에 대하여 GSM(이동전화 일반 규격) 이동전화사업에서 이탈리아 제2위의 지위를 점하는 올리베티사를 필두로 하는 합병회사인 Omnitel 사는 크게 만족하고 있다. 동 회사는 Fido 사업에의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Omnitel 사는 전기통신사업에서 지상회선망에의 접속에 관한 규칙 및 구체적인 조건의 설정에 대하여서는 이동전화망에의 상호접속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 회사는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슈퍼 무선전화는 GSM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Fido 서비스의 가격설정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동 회사는 작년말 이래 GSM 사업에서 TIM 사와의 격심한 경쟁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전 수상인 베를루스코니가 지배하는 「텔레비전 제국」인 Mediaset는 가까운 장래에 이탈리아 제3위의 GSM 사업회사 매수에 따라 통신분야에 진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동 회사도 또한 텔레콤 이탈리아의 Fido에의 진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Fido에 관하여서는 Stet 내에서도 논쟁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Stet의 이동전화분야 자회사의 임원은 당해 분야에의 진입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개입은 Fido의 도입이 늦춰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97, 10/1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97, 10/27 Financial Times & Vol. 25, No. 2 (1997) 국제상사법무)

의 판결에 의해 스웨덴의 주류 소매에 관한 국가독점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타격을 입었다.

당해 독점이 유럽연합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이 판결은 주류 소매에 관한 국가독점을 운영하는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재판소장 - 통상적으로 재판소는 그의 의견을 채택하는데 - 은 스웨덴이 전통적으로 주류 소비가 많기 때문에 당해 독점은 사회적 및 보건상 이유에서 정당화된다고 한 스웨덴 정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41페이지짜리 최초 보고서에서 재판소장은 Systembolaget 체인점의 포도주, 증류주 및 알콜도수가 높은 맥주 판매에 관한 독점은 과도한 공중보건상 조치라고 하였다. 그는 EU의 경쟁규칙은 대중을 알콜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류취급면허와 같은 기타 방법을 채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만일 당해 판결이 전원재판부에 의해 채택된다면, 이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역시 EU 회원국인 핀란드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핀란드는 3

스웨덴 주류 국가독점, 위법 판결 받아

재화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하여 4일 내려진 유럽사법재판소

월 4일 당해 판결을 자동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종적 판결이 역시 주류 국가독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나 아이슬랜드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들 국가들은 EU 회원국은 아니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속해 있으며 국가들간의 거래에 관한 EU 규칙을 준수한다.

이 소식은 스웨덴 정부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스웨덴은 1995년 EU에 가입할 때 알콜 도매 국가독점을 폐지하는 대신 소매에 관한 제한은 지속하기로 유럽위원회와 합의한 바 있다.

알콜은 스웨덴 정부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총 세액 중 6%를 차지한다. 1995년에 Systembolaget는 200억 스웨덴 크로네(26.7억 달러)의 매출액과 세전이익 5,800만 스웨덴 크로네를 기록했다.

스웨덴 재무장관인 Erik Asbrink는 당해 판결은 스웨덴 주류 정책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부 장관인 Margot Wallstrom 여사는 “어떤 경우에도 주류 판매의 전

적인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당해 사건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은 스웨덴 남부 지방의 식료품업자이며 스웨덴이 EU에 가입한 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형사기소된 Harry Franzén에 의해 제기되었다.

어제 내려진 결정은 전원재판부에의 회부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예비적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최종적 판결은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데, 관리들은 판결이 더 오랫동안 지연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97. 3/5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대형 컴퓨터용 프린터업체에 대하여 10만 ECU 제재금

유럽위원회는 독일의 대형 컴퓨터용 프린터 제조업체인 Systemform 사에 대하여 10만 ECU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동회사가 유럽의 대형 컴퓨터용 프린터 시장을 국가별로 분할

함과 함께 도매업체의 재판매 가격에 관하여서도 동 회사가 관여하는 유통시스템을 전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동 회사에 의한 시장분할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어느 것 이든 EC조약 제8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럽위원회는 Systemform 사가 1984년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및 네덜란드의 10개 맹국에서 당해 프린터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거래계약을 도매업체와의 사이에 체결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

즉, 당해 계약은 도매업체에 대하여

① 정해진 각 국가 영토 외로의 동 회사 제품 수출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② 자기 영역 내의 사업자라 하여도 그자가 국외로 수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와 같은 금지사항은 배타적 거래협정에 관한 일괄적용 면제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수출제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다. 더욱이, 전체 계약에서 재판매가격에 관하여 도매업체

와 Systemform 사와의 협의 뒤에 결정하거나 또는 적어도 도매업체는 자기가 결정한 재판매가격을 동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유럽위원회가 결정한 제재금은 가맹국간의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또는 동 브랜드에 대한 소매업체간의 경쟁을 감쇄할 우려가 있는 유통형태에 대한 동 위원회의 엄격한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본 건은 수직적 협조행위(수직적 카르텔)에도 제85조 제1항이 적용됨을 보인 1964년의 Consten & Grundig 사건의 결론에 이은 최신 사례이다.

한편, 유럽위원회의 제재금액의 산정에서는 Systemform 사가 위원회의 이의통지서에 반론 없이, 동 문서의 발송 전부터 계약의 수정작업을 행하고 있던 것이 고려되었다.

(96, 12/4 유럽위원회신문 발표문 & Vol. 25, No. 3 (1997) 국제상사법무)

일본편

중소건설회사 평가제도로 경쟁촉진

건설성은 1998년부터 종합건설회사(제네콘)로부터 공공공사를 하도급받는 전문건설회사의 경영상황과 기술력을 지표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종합건설회사가 계열 외의 중소기업에 공사를 발주하는 기회를 늘려 품질,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동 성은 경쟁원리의 도입을 일단 진척시키면 이것이 공공공사의 비용 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종합건설회사는 건설성과 都道府縣이 경영규모와 기술력을 점수평가하는 경영사항심사(경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유리, 도장 등 전문건설회사의 심사, 평가 제도는 없다. 종합건설회사는 계열기업에서 하도급기업을 선

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개발과 가격경쟁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건설성은 일반경쟁입찰의 보급과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기술력 중시형 입찰의 도입을 거쳐, 공공공사의 발주·수주에 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한 단계 진척시킬 생각이다. 기업의 경영상황·기술력을 평가하는 전문회사판 「경심」이 가능해지면, 종합건설회사는 평가결과를 거래관계가 없는 우수한 발주처를 선정할 때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 성은 이것이 보다 고품질의 공사를 보다싼 비용으로 발주하는 경향을 후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95년 3월말 현재의 건설업 허가업자는 약 55만사인데, 전문건설회사는 20만사 가까 이를 점하고 있다.

(97, 2/5, 일본경제신문)

홋카이도 신문사에 현장조사 - 석간지 진입방해 의혹

홋카이도 신문사가 홋카이도函館市에서 금년 1월부터 석간지 「函館新聞」의 발행을 시작

한 「函館新聞社」에 대하여 신규진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강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8일 오전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홋카이도 신문사 본사 및 函館新聞社 지사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이 문제로 函館新聞社는 공취위에 독금법 위반 혐의를 청구하는 신고를 하였었다.

신고에 따르면 函館新聞社가 석간지 발행의 구상을 명확히 한 직후인 1994년 10월, 홋카이도 신문사는 「函館新聞」, 「夕刊函館」 등 函館 지구에 관계되는 지명이 붙은 신문제목의 상표등록을 출원, 같은 해 11월부터는 석간의 인쇄본에 「函館新聞」이라는 제목을 붙여 발행하였다. 이 행위는 경쟁상대가 될 函館新聞社의 신규진입 방해가 목적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신문제목 문제 이외에도 지지통신사(동경) 및 오지제지(동경), 홋카이도 문화방송(삿포로 시) 등 6개사가 기사의 배포 및 용지공급, 광고의 방영거부를 통하여 홋카이도 신문사의 방해에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97, 3/18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NTT에 엄중 주의 - 1엔 낙찰 관련

국립국회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업화조사를 일본전신전화(NTT)가 1엔으로 낙찰한 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17일,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염매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앞으로 똑같은 유형의 응찰을 하지 않도록 NTT에 엄중히 주의를 내렸다. 동사는 이미 계약을 철회한 상태이지만, 공취위는 독금법 준수를 사내에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아울러 지도하였다.

1엔 낙찰은 과거에도 예가 있는데, 1989년에 후지쯔와 NEC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컴퓨터 시스템개발 및 기본계획책정을 차례로 낙찰받아, 공취위가 양사에 대하여 부당염매 및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엄중히 주의를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시스템의 기본계획을 찬 가격에 낙찰 받아, 그 후 프로그램의 상세설계 및 컴퓨터 본체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올리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취

위는 「과거의 예가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앞으로 똑같은 유형의 저가 낙찰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번에 NTT가 낙찰한 것은 「국회도서관 통합시스템」에 관한 사업조사이다. 2002년 개관 예정인 국회도서관 西館 및 해외의 도서관정보를 네트워크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도서관의 대출, 검색 등의 구조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다. NTT는 하드웨어를 취급하지 않지만, 상세시스템 설계 및 컨설팅계약을 예상하여 1엔에 낙찰하였다고 보여진다.

공취위의 조사 등에 따르면, NTT의 관리부문 등에서는 1엔 입찰이 독금법 위반이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영업의 현장 쪽에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NTT는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계약 자체를 철회한 상태이나, 「다른 입찰에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하여 공취위는 엄중 주의를 단행하였다.

(97, 2/18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6개 사에 과징금 48억엔 - 가드레일 관련 암묵적 카르텔로

도로용 가드레일·가드케이블 제조판매회사가 암묵적 카르텔을 결성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26일까지 동경증시 1부에 상장한 東京製鋼 등 6개사에 총액 약 48억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 과징금 총액은 1991년에 공취위가 시멘트회사의 암묵적 카르텔로 총 12개사에 112억엔의 납부를 명한 것 다음으로서, 역대 2위이다.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업체는 東京製鋼 외에 日鐵建材工業(동경 中央區), 川鐵建材(고베 시), 日本钢管 라이트스틸(埼玉縣 雄谷市), 神鐵建材工業(兵庫縣 尼崎市), 住金鋼材工業(兵庫縣 尼崎市) 등 5개사이다.

과징금 산정의 대상기간은 3년이 한도이므로, 각 사의 과징금액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기간 중 1993년 6월부터 카르텔을 파기한 1996년 6월까지의 판매액의 6%에 해당하는 1억 1,750만엔 내지 14억 740

만엔으로 된다.

가드레일과 가드케이블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합건설회사 등의 건설회사에 발주하고, 건설회사는 판매업자로부터 이를 구입하고 있다. 이들 6개사는 이를 판매업자용 납입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1991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영업담당부장 등의 회합을 개최, 기준으로 되는 건설회사용 가격을 평균 8% 인상하고, 할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기하여 6개사는 판매점에 가격 변경을 통지하였다. 공취위는 판매점용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가드레일의 판매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하여, 1996년 4월에 독금법 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그 다음달에는 6개사도 위반 사실을 인정, 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다.

(97. 2/27 일본경제신문)

뉴질랜드편

뉴질랜드 법원, 도요다 계열 자동차판매업체에 35만 달러 벌금 명령

오클랜드 주 고등법원은 12월 4일, 신차 구입자에 대한 할인한도액에 관한 가격협정을 맺고 있던 오클랜드 주 소재 도요다 계열 자동차판매업체 7개사에 대하여, 상업법(Commerce Act) 위반으로 총액 35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주: 뉴질랜드 경쟁당국인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가격 카르텔 등의 사건심사를 행하고, 위반행위가 행하여졌다는 결론에 달한 경우 고등법원에 제소하였다. 고등법원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개인 50만 달러 이하, 법인 500만 달러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John Feil 상무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무위원회는 본건에 대하여, 오클랜드 주의 토요타 계열 자동차판매업체 8개사가 신차구입자에 대한 최대할인율에 대하여 가격협정을 맺고 있

였다고 하여 심사를 행한 결과 고등법원에 제소하였다」고 말하였다.

오클랜드 주 고등법원에 제출된 합의사실설명서에 따르면 8개사는 1993년 5월 및 6월의 월례판매회의에서 리스회사, 대량구입자, 개인에 대한 최대 할인율에 대하여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제소된 8개사 중 Albany Toyota, North Shore Toyota, North Western Toyota, Greenlane Toyota, Derbyshire Toyota 및 Paparuka Toyota 등의 7개사는 상업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Giltrap Toyota는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중이다.

할인대상으로 한 판매가격은 Toyota New Zealand 사가 각 자동차판매업체에 제시한 추천 판매가격이었다.

신고에 의하여 상무위원회 심사관은 1993년 8월에 자동차판매업체 8개사에 대하여 영장에 따른 수색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 1994년 3월에 오클랜드 주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당해 자동차판매업체들은 위원회의 심사에 협력하였다.

12월 4일, 오클랜드 주 고등

법원은 Toyota 계열 자동차판매업체 7개사에 대하여 각각 5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하였다.

John Feil 사무국장은 「가격 구속은 소비자의 가격에 기한 선택을 방해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상업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더욱이 「본건의 협정은 각 자동차판매업체가 경쟁상대의 최저 판매가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교섭하여 보다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판매업체 각 회사는 뉴질랜드의 총판매회사인 Toyota New Zealand 사의 추천판매가격에 대한 최대할인액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경쟁을 중지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해행위의 효과는 고객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신속한 대처에 의해 본건 협정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 당해협정에 의해 불리하게 취급받은 고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국장은 「경쟁회사의 판매가격에 맞춰 가격을 설정한다든지 이에 대항하여 보다 낮은 가격을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업법상 위법하게 되는 행위는 경쟁업체간의 가격에 관한 협정이다. 이는 정식의 계약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느 계약이 비공식적인 회합, 스포츠클럽 또는 전화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가격카르텔로 간주되어 상업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John Feil 사무국장은 「상무위원회는 가격카르텔을 엄격히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

(96. 12/4 상무위원회신문 발표문 & Vol. 25, No. 3 (1997) 국제상사법무)